

대리처방 안내

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
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 가능!

경우 1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

경우 2

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환자의 거동이 불능한 경우
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등)

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 진료를 받는 경우

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

- 직계존·비속 (부모 및 자녀 등)
-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(배우자의 부모 등)
- 형제·자매
- 직계비속의 배우자 (사위, 며느리)
-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
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
- 1** 환자와 보호자 등 (대리수령자) 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
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- 2**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친족관계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
- 3**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
대리처방을 강요시
환자 및 보호자도 처벌
500만원 이하의
벌금

대리처방 확인서

처방전 수령인	성 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환자와의 관계
	주 소	
환자	성 명	전 화 번 호
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
	주 소	
대리 처방 사유		

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처방전의 대리 수령이 필요함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환자 또는 처방전수령인

(자필서명)